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 유)

제 목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개정 알림

1. 관련

가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, 제9조, 제10조, 제18조, 제22조, 제32조, 제36조의2
나. 제39회 국무회의('26.9.8.)

2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개정공포안이 제39회 국무회의('26.9.8.)에서 아래와 같이 심의·의결되었습니다.

- 아 래 -

구분	현행	개정
참여제한 상한	최대 10년	최대 20년
제재부가금 상한	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	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
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	-	수사기관 고발·수사의뢰 법적근거 마련

3. 아울러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'27. 3월 예정)되오니 연구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붙임 1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.

2. 보도자료 [연구행정 혁신+⑦] 연구비 부정사용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, 자율성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. 1부. 끝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

수신자 : 대학교,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(부설포함)

주무관 이사름

사무관 박지인

연구윤리권익 전결09/09
보호과장 최부용

협조자

수신자

팀원 이희원

부장 김동열

팀장 전결09/10
이상우

시행 연구윤리권익보호과-1738 (2026.09.09.)

접수 산학기획팀-1326 (2026.09.10.)

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, 정부세종청사 4동 3~6층 (어진동) / <http://www.msit.go.kr>

전화 044-202-6973 / 전송 044-202-6048 / reum42@msit.go.kr / 공개